

《수혜자격》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
-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
-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 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

※ 「디지털포용법」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